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박 용 상

1. 구제제도 일반

언론은 공개와 비판을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보도사항에 관련된 개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사태가 야기됨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법익간의 충돌상황을 해결함에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기능을 유지시키면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관계상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스컴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그 피해자에 대하여 치명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남용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개인적 법익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일반법제상으로도 여러가지 방법이 마련되어 왔다. 형사적으로 보아 명예훼손, 신용훼손등과 같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며 처벌을 받게 되며, 민사상으로는 언론보도가 피해자의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피해자로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특히 민법에 의하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으로서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의 청구를 피해자에게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 764 조)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법적 구제제도는 언론침해의 경우에 있어서도 ①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손해 기타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며, ② 그 구제절차인 소송제도의 성질상 신속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생각하면 언론에 의해 공격받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러한 언론법 특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신문윤리위원회 등 자율규제기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하고 심의 결과 언론사에게 사과 · 정정 · 해명 · 취소 등을

명하는 제도가 모색되었으나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한계를 넘을 수 없고 그 실효성의 면에 있어서도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언론침해에 대한 신속 · 적절한 구제책의 강구는 언론계의 큰 과제였으며, 제 5 공화국 헌법개정논의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논의된 바 있었다. 언론기본법이 새로이 규정하게 된 정정보도청구권은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서구의 언론법상 일반화된 반론권(Gegendarstellungsanspruch) 내지 '응답권'(droit de reponse)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 반론권제도의 연혁 및 입법례

언론보도에 의한 잘못을 시정하고 언론자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이미 언론이 사전검열로부터 해방되기 이전에 '관청에 의한 정정강제'(Berichtigungszwang)제도가 있었으나 이것은 경찰국가적 후견사상에 의해 국가가 언론을 지도한다는 사고에 근거한 것이었으므로 오늘날의 반론권제도와는 판이한 것이었다.

사인의 권리로서 언론보도의 오류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은 프랑스의 국회의원이었던 뒤로르(Dularure)의 창안에 의한 것이었다고 전해진다.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 의해 검열제도가 폐지되자 언론은 무절제한 비방과 인신공격의 도구로 남용되었던 바, 국민의회는 이러한 폐단에 대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하게 되었다(1799). 그 논의과정에서 뒤로르는 관청의 정정강제제도의 취지를 개인에게도 확대하자는 생각아래 언론에 의해 공격대상이 된 자에게 개인적 권리로서 '응답권'(droit de reponse)을 인정하자고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반론권제도의 시초가 되었으며, 이 제안은 1822년 프랑스출판법에 규정된 이래 오늘날 구주에서는 물론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입법화하게 되었다.

입법례에 의하면 반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사항에 관하여 사실보도뿐 아니라 논평 · 비판 등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사항에 대해서까지 포함시키는 프랑스의 법제와 사실보도에 국한하는 독일법계로 대별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인격적 법익침해에 대하여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영미법계의 국가에 있어서는 이 반론권제도의 도입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3. 제도적 의의 및 법적 성질

반론권제도는 언론의 공표내용에 의해 개인의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영역에 대해 공격이 가해진 경우 제해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해명을 위해 자신이 작성한 문안의 보도를 언론에 무료로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적인 권리가 언론법상의 특별한 제도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첫째로 이 권리는 언론과 개인간의 사법적 분쟁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된 사법상의 권리란 점에서 종래 공범적 성질을 가지고 그 의무위반에 대해 형벌이 과하여졌던 관청의 정정강제제도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이 권리는 언론보도에 의해 논의대상이 된 개인에 대하여 신속한 반대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 중점이 놓여지기 때문에 보도내용이나 반론의 진실성 여부는 원칙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성의 특징을 갖는다. 진실성 여부를 그 행사의 요건으로 삼는다면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절차기간동안 피해의 구제는 지연될 것이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여부가 필수적인 심리대상으로 되고, 또 언론의 고의·과실 유무가 전제되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이나 민사상의 불법행위제도와 반론권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

이러한 반론권제도가 인정되는 기본적인 법적근거는 첫째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최고 가치를 의미하는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보호사상(헌법 제 9 조)이다.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중대한 기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보다 우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론이 특정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받은 개인에게는 신속, 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헌법상의 요청이기 때문에 보도된 언론기관 자체를 통하여 공격내용과 동일한 범위의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는 이러한 헌법상의 요청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반론권제도는 언론의 공적과업 개념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이것은 언론이 행하는 언론형성의 기능에 대하여 그 전제가 되는 진실발견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 공공 즉 독자는 언론이 시간적 제약아래 일방적으로 수집 공급하는 정보만을 믿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까지 들을 수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반론권은 제한적이거나 언론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반론권은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자신에게 사실주장의 기회를 줌으로써 언론을 실질적인 공론의 광장으로서 그 권위와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몫을

행하는 것이다. 결국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야기한 쟁점에 관하여 상대방의 토론의 자유를 위해 자기의 지면을 할애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을 통하여 공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매스컴에 대한 액세스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

(1) 언론기본법의 규정

언론기본법이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앞서 설명한 대륙법계의 출판법상 인정되고 있는 반론권제도 사법적 권리로 받아들여 이를 민사적인 구제절차에 따라 민사법원의 관할로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일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반론권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동 법은 사실보도뿐 아니라 비평·논평 등 의견 및 가치판단사항에까지 포함시키는 프랑스법제와 사실 보도에 국한하는 독일법계 중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일식 입법례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이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독일의 입법례에 비하여 상당히 제약된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독면에서는 이미 있는 보도가 행해진 후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반론개제 청구하면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즉시 인쇄 완료되지 아니한 판에 반론의 크기가 이미 대상인 보도본문의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전에 보도된 동일한 지면의 동일한 부분에 동일한 문자크기로 이를 게재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바로 법원에 반론개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한 후 이유가 있으면 위에 말한 방법으로 게재를 명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언론기본법은 ①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신문·통신·방송에 있어서는 14일로, 기타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1월로 규정하고(법 제 49 조 1 항), ② 그 실현절차에 있어서도 언론사와의 협의절차(법 제 49 조 3 항)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친 후 법원에의 제소를 허용하고 있고(법 제 50 조 및 제 51 조) ③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게재부위, 활자크기 등에 관하여 명백한 준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요건

① 주 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이고, 반대설이 있으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예컨대 종중등)도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도 인정되는 한(민사소송 제 48 조) 제외할 이유가 없다. 관청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독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② 정기간행물 및 방송의 보도

언론기본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기간행물 즉 신문, 통신 및 연 2 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과 방송(법 제 49 조 1 항, 제 5 조 2 호)의 보도에 한한다. 이들의 보도에 관한 한 그 편집형식이나 공표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언론사 소속원이 작성한 내용이든 독자투고나 외부인사의 청탁에 의한 게재물이든 상관없다. 풍문을 보도했다던가 타 통신 또는 신문의 보도를 전제한 경우에 설사 그 근원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사진 · 만화 등 상형적 표현에 대하여는 반대설이 있으나 정정보도의 방법 등과 관련하여 난점이 있으므로 사전설명 등 언어적 표현만이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광고면에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도 정정보도가 허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종래의 다수설은 광고도 사실주장을 포함하는 경우 반론의 이익을 인정하여 왔으나 ① 광고주의 사적인 주장만이 개진되는 것이고 ② 광고의 직접적인 목적은 언론의 여론형성이라고 하는 공적 과업과 무관하며 ③ 언론사로서도 경제적 이유때문에 이를 게재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광고에 의해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유료의 광고개재청약이 있으면 이를 승낙해야 할 언론 의무는 입법론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일일 것이다.(이른바 계약 강제에 의한 유료의 반론권)

③ 사실적 주장

언론기본법이 사실보도에 한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것은 사실의 진부에 관한 토론만을 허용한다면 그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독자들에게 맡겨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평·논평 등 의견이나 가치판단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리 신랄한 것일지라도 정정보도청구권이 배제된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에 의해 구제될 것이다.

문제는 사실주장과 가치판단의 구별기준이다. 그 구별은 표현사항이 증거에 의해 심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행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사실이란 과거에 행해졌거나 현존 존재하는 상태로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하는 바, 반드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외부적 사실)만이 아니라 동기, 목적, 정조 등 내부적 사실도 포함된다(예컨대 갑이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 했다는 보도에 대해 갑은 불을 끄려고 들어갔다는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경우). 미래의 사실에 관한 보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미래의 사실이 현재의 내심의 사실에 의해 확정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예컨대 정치가 을이 내년에 정계에서 은퇴하리라는 보도에 대해 을은 현재 그러할 생각이 없다고 반론을 청구하는 경우).

가치판단이란 윤리적·종교적·경제적·사회적·예술적 척도에 따른 주관적 판단을 의미하며, 그 표현에 객관적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판단의 표현이 확정된 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그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유의할 점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서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정보도청구가 형식적 성질을 갖는데서 나오는 당연한 결론이며, 신속한 반론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의의로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반론 즉 피해자가 제출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가 거부된다는 점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법 제 49 조 3 항 단서)

④ 보도내용과 피해자간의 개별적 연관성

언론기본법은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여 보도내용과 피해자간의 ‘개별적 연관성’이 요구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대해 동감하지 않는 모든 독자에게 반론권을 인정한다면 언론활동은 마비될 것이기 때문에 반론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요건의 범위를 정함에는 언론의 이익과 피해자 즉 공공의 이익간에 합리적인 조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보도내용과 피해자의 고유한 이익 영역간에 일반적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요한다. 따라서 흡연자·음주자 전반에 대한 비난적 보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 예컨대 일반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신문보도 때문에 자기의 판매계획이 좌절되었다고 주장하는 상인에게도 반론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독일판례는 스페인 행 관광모집을 업무로 하는 베를린의 한 여행사가 스페인여행에는 천연두 예방접종이 요구된다고 오보한 베를린 신문보도 때문에 현저히 예약이 줄어들었음을 이유로 제기한 반론게재청구소송에서 개별적인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요구되는가 아니면 '간접적인' 연관성으로 족한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프랑스 법에 의하면 직접적인 관련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독일의 다수설은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도 반론권을 인정한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반론권제도를 입법한 취지를 살리는 범위에서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당·회사나 협회와 그 소속원간, 학교와 학생간, 친구간에는 어느 일방에 대한 보도에 대해 타방의 반론권을 인정할 연관성은 부인될 것이지만, 예컨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교호가 불완전 하였다거나 처에 대한 비난적 보도에 대하여 부모나 남편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연관성밖에 없다 하더라도 반론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자에 대한 보도에 관해서도 유족에게 간접적인 연관성을 이유로 반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함이 독일의 다수설이지만, 역사적 인물에 대한 보도는 자기와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다만 이 경우에도 그를 선조로 봉사하는 종중명의로 청구하는 때에는 반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관성에 관해 요건은 사심 없는 독자가 읽을 때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성명이 명기되지 않았거나 가명을 사용한 경우에도 특정인과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식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위 관련성의 요건은 청구인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 합리적으로 주장하면 족하고, 별도의 입증이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손해 발생이나 침해사실을 주장할 필요도 없다.

(3) 예 외

정정보도청구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 연관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형성때문에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즉, 그 성립요건으로서 사실적 주장에 국한하고 있으나 보도와 피해자간의 개별적 연관성만 있으면 보도된 내용이 진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반론권의 성립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언론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허용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받았음을 주장할 필요도 없다.)

언론기본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남용으로부터 언론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예외사유가 있으면 언론사측이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언론사에 있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①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법 제 49 조 제 3 항단서)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란 피해자가 이익의 대상인 보도내용에 대응할 실질적 이익내지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예외사유는 실질적 요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정보도청구권의 형식성을 완화하여 그 행사 범위를 현저하게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아 허보나 오보 등 진실이 아닌 보도에 대하여 이 정당한 이익의 정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언론이 스스로 속보에 의해 앞의 보도를 명확하게 충분히 정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예컨대 화재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건물의 높이가 실제 25m 인 것을 20m 라고 오보한 경우와 같이 사소한 지엽적인 오보의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보도내용이 수인에 관계된 때 중복청구에 관하여는 정당한 이익의 유무판단이 중요하다. 제 2 의 청구자는 제 1 청구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는 반론청구의 이익이 없으나, 새로운 사실과 관점에 관해서는 그 이익이 안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이 중지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은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법 제 49 조 3 항 단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진실에 적합한 여부가 원칙상 문제되지 아니함은 반론권 제도가 피해자 자신의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할 기회를 부여하고, 진실발견을 위한 시간적 지체 때문임을 이유로 하는 것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이른바 반론권의 형식적 권리의 성격). 그러나 반론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까지 이를 허용한다면 정의에 관념에 맞지않고 반론권이 남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예외사유가 규정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란 언론사 자신이 그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일반적으로 공지의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정정보도가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법 제 49 조 3 항 단서)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광고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규정된 예외사유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정보도가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법 제 49 조 4 항)

위법한 내용이란 공표시에 범죄가 되어 처벌받게 될 내용(예컨대 명예훼손)을 말한다. 이러한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편집인이 형사책임을 받게 되므로 당연한 예외 사유라고 생각된다. 제 3 자에 대하여 범죄가 되는 경우 뿐 아니라 언론사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범죄가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공표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형법 제 310 조)에는 반론권이 거부될 수 없다.

⑤ 정정보도의 내용이 적절한 범위를 초과할 때

첫째로 정정보도의 내용은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된다. (법 제 49 조 4 항) 즉 정정보도는 이외의 대상이 된 보도 내용과 관념적인 연관성을 갖는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도 내용과 상반 또는 모순된 내용이 될 것이나, 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환언하면 보도 내용에 의해 전해진 불충분한 인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보충적 또는 추가적 진술도 허용된다.

둘째로 반론의 크기는 이미 있는 보도 내용의 크기와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법 제 49 조 5 항) 이미 대상인 보도기사가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기사전체의 자수를 표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기사 중에서 직접 언급된 문장만을 표준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⑥ 공공기관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충실한 보도의 경우(법 제 49 조 7 항)

충실한 사실 보도라 함은 회의나 심리경과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올바른 취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족하나, 왜곡, 과장되게 보도된 경우나 중요한 사항을 탈락시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로서는 국회, 지방의회 및 위원회 등 법률에 의해 공개가 규정된 경우와 당해기관이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 이들 절차에 관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공개정의 원리에 충실하자는 목적 외에 그 과정에서 행해지는 관계자의 진술은 직무상 면책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⑦ 기 타

언론기본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법상 반론권의 성질에 따라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관청의 직무상 공표를 게재한 관보 등 관청의 발간물이다. 외국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내국에서 보급되는 경우라도 반론권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반론보도에 대한 재차의 반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1) 언론사에 대한 청구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선택적으로 언론사에 직접청구 하거나(법 제 49 조 1 항)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해야한다(법 제 50 조 4 항). 언론사에 대한 청구는 당해 언론사의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정정보도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의 대상인 보도 본문 또는 사본과 게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문제된 보도가 행해진 후 신문, 통신, 방송의 경우에는 14 일 이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 월 이내이다.

정정보도문의 작성에 유의할 것은 전술한 예외 사유에 대한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위가 이의대상인 보도본문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보도내용과 관념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로서는 첨부된 정정보도문(반론)의 형식, 내용, 범위 등이 법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게재 또는 방송을 거부할 수 있으나, 언론기본법은 당사자간에 호양에 의한 해결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언론사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정정보도청구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제목, 내용, 크기, 게재 또는 방송의 일자나 부위 및 시간 등 정정보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 49 조 3 항). 중요한 것은 정정보도문의 크기가 허용되는 범위 이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적정한 분량으로 조절하고, 내용에 관하여 부적법한 사항은 수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일일 것이다. 크기는 이의있는 보도본문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적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게재부위나 문자의 크기는 보도 본문의 그것이 기준으로 된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협력할 의무가 있다.

협의를 성립한 경우에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언론사로서는 거부의 이유를 설명 해야 한다. 협의가 성립된 경우 신문

통신의 경우에는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협의된 정정보도문을 무료로 게재해야 한다. 협의내용에 따라 첨삭함이 없이 게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문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다(법 제 49 조 5 항). 정정보도문의 머리나 말미에 편집자의 주석을 붙일 수는 있으나 사실적 설명에 국한되며,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동일한 판에 그에 대한 비파적 기사는 금지된다

(2)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중재신청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나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앞의 경우에는 언론사에 직접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뒤의 경우에는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론기본법이 규정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제도는 반론권 제도가 일반화된 서구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로써 우리법상 독특한 것이다. 그 입법취지는 새로운 생소한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언론활동에 대한 충격이나 피해자의 권리남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 운영규칙’과 ‘언론중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중재위원회는 각 지방법원 소재지마다 1개 이상의 중재부를 두고(영 제 37 조) 중재사건은 당해 언론사(피신청인) 소재지 관할지방법원에 설치된 중재부가 관할한다(영 제 38 조 1 항). 중재부는 3인의 언론중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가 된다.

중재부에서의 절차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 달성을 위하여 간행된다. 이를 위하여 중재부는 쌍방의 주장을 청취하고 청구권의 요건과 예외 사유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그 주장의 당부를 설명하고, 상호 양보에 의해 중재의 성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지만, 강제조정권은 부여되지 않고 있다.

신청인의 권리주장이 이유있는 경우 중재부가 준거할 조정의 기준은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일 것이다.

즉, 피해자의 반론게재는 언론에 의한 공격에 대하여 대등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어방도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점이다. 독일법에 의하면 반론은 전의 보도내용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 편집완료 되지 아니한 판에 이의있는 보도가 행해진 것과 동일한 문자크기로 동일한 면의 동일부위에 인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무기대등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중재는 신청이 접수된 후 14 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중재가 성립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법 제 50 조 7 항). 중재결과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법원예의 정정보도명령신청

언론기본법은 중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 법원예의 출소를 가능하게 하고 그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은 민사적 구제절차가 부여되는 언론법상의 특수한 권리임이 명백히 되었고 신속한 반대진술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취지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가처분절차가 준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한 절차는 정정보도청구권을 최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의미한다. 또 동 법의 규정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사건은 가처분절차를 준용하되 ① 본안소송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며 ②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을 요하지 아니하게 한 서독의 입법례를 본받고 있으므로(법 제 51 조 3 항 단서 및 민사소송법 제 697 조, 제 705 조) 소송법적으로 보아 특수한 소권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법 제 51 조 4 항에 따라 제정된 ‘정정보도청구사건 심판규칙’(1981. 2. 23 대법원 규칙 제 753 호)에 의하면 ① 정정보도명령의 단행가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과 관련하여 그 심리에 있어서는 변론을 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당사자 쌍방을 심문하도록 하여 (동 규칙 제 3 조 2 항) 법적인 청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②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이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상 가처분결정에 있어서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 700 조 2 항 내지 4 항)과 가압류해방금액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제 702 조)은 적용이 배제되고(동 규칙 제 3 조 2 항및 제 4 조 3 항), ③ 정정보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 703 조, 결정에 의한 경우)이나 항소(판결에 의한 경우)만이 허용되도록 규정되고 있다(동 규칙 제 5 조).

정정보도명령신청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 51 조 1 항 단서). 전치절차로서 중재신청 및 그 불성립은 소송요건이 되므로(법 제 51 조 1 항 본문), 이를 구비하지 못한 신청은 부적법 각하한다. (동 규칙 제 3 조 1 항 참조). 정정보도명령신청에 대한 제 1 심재판은 피고(언론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법 제 51 조 2 항). 정정보도명령신청서의 작성과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위 규칙 제 2 조가 규정한다.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여 그 흠결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중재사건 기록의 송부를 촉탁함과 동시에 변론 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 3 조 1 항 및 3 항).

법원이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할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및 회수와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 4 조 1 항). 특히 제목의 내용과 활자 크기도 명시하고 게재부위 및 크기에 관하여는 제 0 면 또는 사회면 좌상단 0 단 크기 등도 명시하여 신문조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정정보도의 내용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참작하여 정해져야 한다(동 규칙 제 4 조 2 항). 그 기준에 관하여는 앞서 언론사의 협의절차와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서 언급한 무기대등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신청된 정정보도문이 부정확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진술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전술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 적절히 삭제 또는 수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의 의미나 전체적 취지를 일탈할 수는 없고, 수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정정보도 명령의 재판소에는 민사소송법상 신청인의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과 피신청인의 가압류해방금액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법 제 3 조 4 항, 제 4 조 3 항, 민사소송법 제 700 조 2 항 내지 4 항, 제 702 조). 정정보도명령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재판을 피신청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 4 조 4 항).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이의신청 또는 항소만이 허용된다.

정정보도명령 집행은 이른바 불대체적인 이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 693 조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이 허용될 것이다. 이행기간 지연에 따른 배상액 또는 즉시 손해배상액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과 액수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 서울대학교, 프라이부르크대학, 서울대학교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저술 및 논문 : 출판의 자유와 공적과업 ,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과 프라이버시 외 다수

□ 현재 서울고등법원판사